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이상민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근로감독정책단의 존속기한을 2022년 10월 15일까지에서 2023년 1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, 근로감독정책단에 두는 정원 12명(고위공무원단 1명, 4급 2명, 5급 3명, 6급 3명, 7급 3명) 중 4명(4급 1명, 5급 1명, 6급 1명, 7급 1명)은 감축하고, 8명(고위공무원단 1명, 4급 1명, 5급 2명, 6급 2명, 7급 2명)은 그 존속기한을 2022년 10월 15일까지에서 2023년 1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,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고용노동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9. 00. ~ 10. 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3항에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7. 임금, 근로시간, 휴일, 휴가 및 휴게와 관련한 정책 및 제도의 개선
· 시행

18.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 수립 및 시행에
관한 사항

제42조제1항 중 “2022년 10월 15일”을 “2023년 1월 31일”로 하고, 같은
조 제3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.

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근로감독정책단의 존속기한 만료에 관한 경과조치) 제42조제1항
의 개정규정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근로감독정책단장이 분장하는 사항
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한이 지난 날
부터 근로감독정책단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노동정책실장이 분장한다.

[별표 5]

고용노동부의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(제42조제4항 관련)

근로감독정책단(존속기한: 2023년 1월 31일)

총계	8
일반직 계	8
고위공무원단	1
3급 또는 4급 이하	7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1조(노동정책실) ①·② (생략)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~ 16. (생략)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19. ~ 30. (생략)	제11조(노동정책실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. 1. ~ 16. (현행과 같음) <u>17. 임금, 근로시간, 휴일, 휴가 및 휴게와 관련한 정책 및 제도의 개선·시행</u> <u>18.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현장 정착을 위한 지원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</u> 19. ~ 30. (현행과 같음)
제42조(근로감독정책단) ①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에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<u>2022년 10월 15일까지</u>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근로감독정책단을 둔다. ② (생략)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~ 5. (생략) <u>6. 임금, 근로시간, 휴일, 휴가</u>	제42조(근로감독정책단) ① ----- ----- ----- --- <u>2023년 1월 31일</u> -----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

<u>및 휴게와 관련한 정책 및 제도의 개선 · 시행</u> <u>7.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현장</u> <u>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 수립</u> <u>및 시행에 관한 사항</u> ④ · ⑤ (생 략)	<u><삭 제></u> ④ · ⑤ (현행과 같음)
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42